# 최 신 판 례 예 규

-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 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 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탁용역 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임

서면법령부가-5469, 2021.12.29

## ▮질 의

-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사업에서
-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 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조건으로 재발급 가능한지
-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 신탁재산(사업장), 수익자 중 누구인지

#### ■회 신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인 경우로서

- 1. 분양대행업자가「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 (이하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신탁용역 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 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사전법령재산-333, 2021,12,31

## ▮질 의

•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오픈 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질의

•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 는지 여부

#### ▮회 신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 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 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 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자본거래-911, 2022.03.08

#### ▮질 의

- 민원인은 000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로 AAA공사의 협의 매수에 따라 대토보상계약을 체 결함
- 이후,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인 BBB부동산 투자회사(이하 'BBB')에 현물출자 후 주식을 받음
- 'BBB'의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 후에 양도할 예정임 질의
-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일반적인 주식의 양 도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

#### ■회 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제 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법인-45, 2022.03.11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임 금인상액을 2020년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8항제2 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보는 것입니다.

2022 · 08 · 31 www.eAnSe.com 13